



# 공공예남소식

2018년 4월 2일(제424호)

## HAENAM NEWS

### ◆ 군정목표 ◆

힐링시티 해남건설로  
군민행복시대 구현

### ◇ 군정방침 ◇

농수산업 1조원 시대 실현  
주민감동 1류 복지서비스 증진  
치유여행 1번지 문화관광 육성  
인재육성 1등 교육환경 조성  
창조적인 1품 행정 추진

발행인: 해남군수 발행처: 기획홍보실 주소: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표전화 061)530-5462 팩스 530-5574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공고·고시·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 조례

|               |       |    |
|---------------|-------|----|
| ◎ 해남군조례제2704호 | ----- | 1  |
| ◎ 해남군조례제2705호 | ----- | 6  |
| ◎ 해남군조례제2706호 | ----- | 8  |
| ◎ 해남군조례제2707호 | ----- | 11 |
| ◎ 해남군조례제2708호 | ----- | 20 |
| ◎ 해남군조례제2709호 | ----- | 23 |
| ◎ 해남군조례제2710호 | ----- | 41 |
| ◎ 해남군조례제2711호 | ----- | 45 |

## 공고

|                   |       |    |
|-------------------|-------|----|
| ◎ 해남군공고제2018-628호 | ----- | 49 |
| ◎ 해남군공고제2018-631호 | ----- | 53 |
| ◎ 해남군공고제2018-640호 | ----- | 73 |
| ◎ 해남군공고제2018-646호 | ----- | 74 |
| ◎ 해남군공고제2018-661호 | ----- | 76 |

조

레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3. 20.)에서 의결된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2일

해남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해남군 조례 제2704호

붙임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 일괄개정) 해남군 조례 중 일괄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조례 일괄개정 대상

| 연번 | 부서명   | 자치법규명                  | 조항        | 개정내용                                 |                                      | 개정이유    |
|----|-------|------------------------|-----------|--------------------------------------|--------------------------------------|---------|
|    |       |                        |           | 현행                                   | 개정안                                  |         |
| 1  | 기획홍보실 |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5조       | “행정자치부”가 정한                          | “행정안전부”가 정한                          | 부처명칭 변경 |
| 2  | 기획홍보실 |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30조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이                           | “행정안전부”장관이                           | 부처명칭 변경 |
| 3  | 기획홍보실 |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5조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부처명칭 변경 |
| 4  | 주민복지과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조례        | 제5조제1항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가한                    |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 부처명칭 변경 |
| 5  | 주민복지과 |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6조제2항제4호 |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 <b>부락</b> ”으로 이루어져    |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 <b>마을</b> ”으로 이루어져    | 일본식 한자어 |
| 6  | 총무과   |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2조제2항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령                             | 부처명칭 변경 |
| 7  | 총무과   |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20조제3항   |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 <b>지참</b> ” · 조퇴  |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 <b>지각</b> ” · 조퇴  | 일본식 한자어 |
| 8  | 총무과   |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21조제1항   |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 <b>지참</b> ” · 조퇴 |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 <b>지각</b> ” · 조퇴 | 일본식 한자어 |
| 9  | 재무과   | 해남군 납세자 보호             | 제14조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부처명칭    |

| 연<br>번 | 부서명   | 관 사무처리에 관한<br>조례<br>자치법규명       | 조항                  | 개정내용                    |                          | 변경<br>개정이유 |
|--------|-------|---------------------------------|---------------------|-------------------------|--------------------------|------------|
|        |       |                                 |                     | 현행                      | 개정안                      |            |
| 10     | 재무과   | 해남군 공유재산 관<br>리 조례              | 제22조의3              | “행정자치부”장관이              | “행정안전부”장관이               | 부처명칭<br>변경 |
| 11     | 재무과   | 해남군 공유재산 관<br>리 조례              | 제35조제2항             | “행정자치부”장관이              | “행정안전부”장관이               | 부처명칭<br>변경 |
| 12     | 재무과   | 해남군 공유재산 관<br>리 조례              | 제38조제1항,<br>제2항,제3항 | “행정자치부”장관이              | “행정안전부”장관이               | 부처명칭<br>변경 |
| 13     | 재무과   | 해남군 공유재산 관<br>리 조례              | 제63조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이              | “행정안전부”장관이               | 부처명칭<br>변경 |
| 14     | 재무과   | 해남군 공유재산 관<br>리 조례              | 제63조의2              | “행정자치부”장관이              | “행정안전부”장관이               | 부처명칭<br>변경 |
| 15     | 종합민원과 | 해남군 건축 조례                       | 제14조제1항             |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          |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 부처명칭<br>변경 |
| 16     | 농정과   | 해남군 친환경농업<br>육성 조례              | 제19조제2항제4<br>호      | 흙살리기(“녹비”작물 등) 추진<br>실적 | 흙살리기(“꽃거름”작물 등) 추진<br>실적 | 일본식<br>한자어 |
| 17     | 지역개발과 | 해남군 전통시장 및<br>소상공인 지원을 위한<br>조례 | 제4조제3항              | “중소기업청”장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 부처명칭<br>변경 |
| 18     | 지역개발과 | 해남군 전통산업 보전구역<br>지정 및 규모·준대규모   | 제9조제1항              | “중소기업청”장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 부처명칭<br>변경 |

| 연<br>번 | 부서명   |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br>관한 조례<br>자치법규명                          | 조항             | 개정내용           |                | 개정이유         |
|--------|-------|--|----------------|----------------|----------------|--------------|
|        |       |  |                | 현행             | 개정안            |              |
| 19     | 지역개발과 | 해남군 전통산업 보전구역<br>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br>점포의 등록제한 등에<br>관한 조례 | 제11조제4항제4<br>호 | “중소기업청”장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 부처명칭<br>변경   |
| 20     | 안전건설과 | 해남군 어린이놀이시설<br>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2조            | “국민안전처”장관이     | “행정안전부”장관이     | 부처명칭<br>변경   |
| 21     | 안전건설과 |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br>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22조제1항        | “국민안전처” 장에게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부처명칭<br>변경   |
| 22     | 안전건설과 |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br>부담금 징수 조례                               | 제3조제3항         | 굴착표준 최적 “구배” 와 | 굴착표준 최적 “경사”와  | 일 본 식<br>한자어 |
| 23     | 의회사무과 |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br>등에 관한 조례                              | 제15조제1항        |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 일본식<br>한자어   |

제280회 해남군의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3. 20.)에서 의결된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2일

해남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해남군 조례 제2705호

붙임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1부.

##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수급자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확보)** 군수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시기,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재산상황, 재학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3. 20.)에서 의결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2일

해남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권한대행

해남군 조례 제2706호

붙임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환산금”을 “환산금 및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기타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제24조제1항 중 “등록된”을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 등록된”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참여하는”을 “참여하여 현장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로, “연속 참여”를 “연속하여 봉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을 “현장체험”으로, “등에 참석하는 봉사 활동”을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여”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3조(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①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한 환산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부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기타 사회복지시설 후원</p> | <p>제23조(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① -----<br/>-----<br/>- 환산금 및 물품-----<br/>-----.</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기타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p> |
| <p>제24조(보험가입 등) 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 <p>제24조(보험가입 등) ①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br/>-----.</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25조(식비등 지원) ①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 센터주관 자원봉사 활동 등에 자발적 참여하는 1일 4시간 이상 연속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급식비</p> <p>②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 합동연수, 축제 등에 참석하는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p>                        | <p>제25조(식비등 지원) ① -----<br/>-----참여하여 현장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연속하여 종사한 자원봉사자의 급식비</p> <p>② 현장체험, 합동연수, 축제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p>                                 |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3. 20.)에서 의결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2일

해남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해남군 조례 제2707호

붙임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제1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신청인 서약서

제17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자율”을 “가급적 이자율”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성명란의 “한자” 기입부분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6조(신청) 장학생으로 추천받<br/>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br/>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br/>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나<br/>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br/>다.)</p> <p>1.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3. (생략)</p> | <p>제16조(신청) -----<br/>-----<br/>-----<br/>-----</p> <p>1. (현행과 같음)</p> <p>2. <u>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u><br/><u>·조회 동의서</u></p> <p>3. <u>신청인 서약서</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
| <p>제17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br/>수한 학교장은 장학금을 지급함<br/>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br/>매 학년 초에 <u>별지 제3호서식</u>의<br/>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위원<br/>회 위원장에게 추천한다.</p>  | <p>제17조(추천) -----<br/>-----<br/>-----<br/><u>별지 제4호 서식</u>-----<br/>-----<br/>---</p>   |
| <p>제24조(기금의 관리) ① 이 기금<br/>은 <u>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u><br/><u>예치 관리</u>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 <p>제24조(기금의 관리) ① -----<br/><u>가급적 이자율</u>-----<br/>-----.</p> <p>② (현행과 같음)</p>  |

<현행>

[별지 제1호서식]

| 해 남 군 장 학 금 신 청 서   |             |           |     |                  |
|---|-------------|-----------|-----|------------------|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남/여) |     | 사 진<br>3.5×5(cm) |
| 현 주 소   |             |           |     |                  |
| 재적학교  | (전공과목: )    | 학 교       | 학 과 |                  |
| 친 권 자 (또는 법정 대리인)   |             |           |     |                  |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직 업       | 주 소 | 지원자와의 관계         |
|   |             |           |     |                  |
| <p>본인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 원 자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친권자(법정대리인)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u> 위원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 1. 성적증명서 1통 |           |     |                  |

[별지 제3호 서식]

| 해남군 장학생 추천서  |   |           |
|--|---|-----------|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남/여) |
| 현 주 소  |   |           |
| 재직학교   | 학교                      학과                      학년<br>(전공과목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위 학생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남군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p> |   |           |
| 20    년            월            일  |   |           |
| 추천학교장  |   | (서명 또는 인) |
|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u> 위원장 귀하</p>   |   |           |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해남군 장학금 신청인으로서 해남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동안 이중지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지원에 따른 반환금을 반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3년 동안 장학금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 구분           | 종류 및 반환금  |
|--------------|---|
| 장학금 종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국가장학금 I·II유형</li> <li>■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 국가장학생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 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li> <li>■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학금</li> <li>■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BK21', 'NURI' 등 정부지원 문제해결인력 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li> <li>■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li> </ul> </li> </ul> |
| 이중지원에 따른 반환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li> <li>■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함.</li> </ul>   |
| 이중지원의 예외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li> </ul> </li> <li>■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li> </ul>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  |           |       |     |
|--|-----------|-------|-----|
| <b>해남군 장학생 추천서</b>   |           | 추천분야  |     |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  |           | . . . |     |
| 재학학교   | 고등학교 학년 반 |       |     |
| 추 천(공 적) 내 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ul>   |           |       |     |
| <p>위 학생은 상기 추천분야에서 위와 같이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였으므로<br/>해남군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추 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소 속 :    고등학교</p> <p style="text-align: center;">직 위 :                            성 명 :                            ①</p> <p><b>해남군장학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b></p> |           |       |     |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3. 20.)에서 의결된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2일

해남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해남군 조례 제2708호  
붙임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1부.

##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지역 주민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3조(역할)** 해남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한다.

**제4조(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의 지원 신청을 받아 해남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①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6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이용하

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3. 20.)에서 의결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2일

해남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해남군 조례 제2709호

붙임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을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재혼가정일 경우에는 부(父) 중심으로 지원한다”를 “출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 수만 인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7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u>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u>」(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에 따라 해남군 지역의 임신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신생아와 입양된 영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br/>-----<br/>----- 「<u>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u>」(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br/>-----<br/>-----<br/>-----<br/>-----<br/>-----<br/>-----<br/>-----<br/>-----<br/>-----<br/>-----.</p> |
| <p>제4조(양육비 등 지원기준) ① (생략)<br/>② 양육비는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u>재혼가정일 경우에는 부(父) 중심으로 지원한다.</u>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각각 지원한다.<br/>③ ~ ⑥ (생략)</p>  | <p>제4조(양육비 등 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br/>② -----<br/>----- <u>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 수만 인정한다.</u> -----<br/>-----<br/>③ ~ ⑥ (현행과 같음)</p>  |
| <p>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생략)<br/>② 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양육비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u>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u>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 <p>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u>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u>-----<br/>-----.</p>   |

<현행>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   |  |  |   |   |                              |                |
|---|--|--|---|---|------------------------------|----------------|
| <b>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b>                       |  |  |   |   |                              |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
|   |  |  |   |   |                              | 신청일 : 20 . . . |
| 신청인<br>(대리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 출산자와의<br>관계                                     | 휴대전화<br>(집전화)   |                              |                |
|   |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읍·면   |   |   |                              |                |
| 출산자<br>(산모)                                   | 성명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br>(집전화)                                   |   |                              |                |
|   | 주소<br>(주민등록 주소지)   | 전라남도 해남군 읍·면 <span style="float: right;">※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span> |   |   |                              |                |
| 신생아   | 성명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 분만의료기관  |   |                              |                |
|   | 군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출생신고일   | 년 월 일   | 자녀수                          | 자녀 중 째         |
| 가족<br>사항                                      | 세대주<br>와<br>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주소<br>(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                |
|   | 본인   |  |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
|   | 배우자  |  |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
|   | 자  |  |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
|   | 자  |  |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
|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br>(전남 해남군)                      | <input type="checkbox"/>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도비, 군비)   |  |   |   |                              |                |
|   | <input type="checkbox"/> 산모아기사랑 택배   |  | <input type="checkbox"/> 수령지 주소(출생등록 당시 주소) :   |   |                              |                |
|   |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 <input type="checkbox"/> 출산 축하 용품 지원            |   |                              |                |
|   | <input type="checkbox"/> 유착기 무료 대여(1개월)  |  |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정(5인 이상) 생활 안정금 지원 |   |                              |                |
| 일반  | <input type="checkbox"/> 가정양육수당  | 아기 이름  | 신청 내용   |   |                              |                |
|   |  |  |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가정양육)             |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                              |                |
|   |  |  |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가정양육)             |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                              |                |
| 다자녀(3명 이상)                                    |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_____, 고객번호 : _____)<br><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_____, 고객명 : _____, 고객번호 : _____) |  |   |   |                              |                |
| 급부계좌<br>(지역난방<br>요금경감<br>신청시<br>압류방지<br>통장제외) | 성명   | 출산자와의 관계   | 대상서비스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비고(사유)         |
| 결과 통지 방법                                      |  | <input type="checkbox"/>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                              |                |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   |   |
|---|---|
| <b>접수담당자 확인 사항</b><br>(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 ① 가족관계사항 - <input type="checkbox"/> 출생사실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여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br>② 주민등록사항 -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 째 |
|---|---|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면]

|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
|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br>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br>*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br>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br>※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br>※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주민생활지원팀  |

| 안 |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
| 내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용이용 사전 동의**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센터 등)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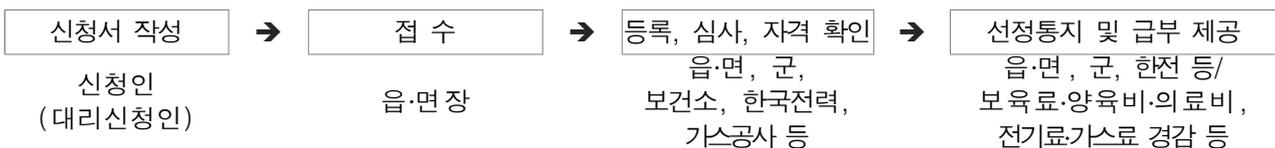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처 리 절 차**







<현행>  
[별지 제7호 서식]

| 유형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  |  |
|---------------------------|--|-------------|--|--|
|                           | 급부 명   | 소관기관        | 신청 구비 서류                                     | 신청기관   |
| 일반<br>*소득무관               | 가정양육수당신청   | 보건복지부       | 통장사본(아동본인명의 또는 부모명의)<br>농어촌양육수당신청 시 '농업인확인서' | 읍·면·동 주민센터<br>※개별신청 시 인터넷(복지로)<br>* 출생 후 6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출생일로부터 소급 지원함 |
|                           | 만0~2세 보육료 신청                                       | 보건복지부       | 변경동의서  | 읍·면·동 주민센터<br>※개별신청 시 인터넷(복지로)                                       |
| 다자녀<br>*3자녀(손) 이상         | (다자녀)도시가스요금 경감                                     | 한국가스공사      | 자격증명서류<br>- 주민등록등본<br>-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읍·면·동 주민센터<br>※개별신청 시 관할 도시가스 회사 방문, 팩스, 우편                          |
|                           | (다자녀)전기료 경감  | 한국전력공사      | 자격증명서류<br>- 주민등록등본<br>-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읍·면·동 주민센터<br>※ 개별신청 시 관할전력공사 지사 방문, 우편, 아파트관리사무소                    |
| 지방자치 단체<br>자체 급부<br>(해남군) | 신생아 양육비 지원<br>(출생일 이전 군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 전라남도<br>해남군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읍·면<br>주민생활지원팀<br>※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                           | 산모·아기사랑 택배 지원<br>(출생일 이전 군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 해남군         | 신청서  | 읍·면<br>주민생활지원팀<br>※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br>(셋째아 이상)                           | 해남군         | 신청서  | 읍·면<br>주민생활지원팀<br>※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                           | 유축기 대여<br>(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수유부)                     | 해남군         | 출생증명서 1부                                     | 보건소<br><신청방법> 방문   |
|                           | 출산축하용품 지원<br>(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해남군         | 출생증명서  | 보건소<br><신청방법> 방문   |
|                           | 다자녀가정(5인이상) 생활안정금 지원                               | 해남군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읍·면<br>주민생활지원팀<br>※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 유형                       | 임신 “급부” 서비스 목록                                      |                          |   |  |                     |
|--------------------------|---|--------------------------|---|--|---------------------|
|                          | 급부 명  | 소관기관                     | 신청 구비 서류  | 신청기관   |                     |
| 일반<br>*소득무관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 보건복지부                    | 임신확인서   | 시군구보건소(의료기관)<br><신청방법> 방문  |                     |
|                          | 산모건강관리(엽산제/철분제 지원)                                  | 보건복지부                    | 임신확인서   | 시군구보건소<br><신청방법> 방문  |                     |
|                          | (건보)임신출산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진료비신청서<br>임신확인서<br>* 하나의 서식에 포함됨                    | 시군구보건소<br>건강보험, 우체국, 은행<br><신청방법> 방문                             |                     |
|                          | (건보)임신출산진료비 잔액확인                                    | 보건복지부                    | -   | 건강보험공단지사<br><신청방법> 인터넷   |                     |
| 일반<br>*근로자               | 유산·사산휴가/급여  | 보건복지부                    | 휴가급여신청서<br>유산/사산확인(진단)서<br>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사본               | 고용센터<br><신청방법> 최초의 방문,<br>인터넷                                    |                     |
| 청소년                      | (청소년)임신출산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진료비신청서<br>임신확인서<br>* 하나의 서식에 포함됨                    | 사회서비스 전자비우체<br>홈페이지<br>(www.socialservice.or.kr)<br><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
| 저소득                      | 의료보험수급권자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신청서<br>임신확인서<br>* 하나의 서식에 포함됨                  | 건강보험, 우체국, 은행<br><신청방법> 방문                                       |                     |
|                          | 전국가구평균소득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부,모 둘다 필요),<br>시술비지원신청서<br>난임진단서, 자격증빙서류         | 시군구보건소<br><신청방법> 방문  |                     |
|                          | 기초생활수급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부,모 둘다 필요),<br>소득증빙서류                            | 시군구보건소<br><신청방법> 방문  |                     |
|                          | 기준이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65%이하)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부,모 둘다 필요),<br>출산(예정)일 증빙서류<br>소득증빙서류                     | 시군구보건소<br><신청방법> 방문 |
|                          |   | 신생아의 청각 선별검사 (60%이하)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부,모 둘다 필요),<br>소득증빙서류                                     | 시군구보건소<br><신청방법> 방문 |
| 장애인                      | 여성장애인이어울림센터 (고충상담, 생활지원)                            | 여성가족부                    | -   | 여성장애인이어울림센터<br><신청방법> 전화, 우편,<br>인터넷                             |                     |
| 다문화가정<br>(외국인)           |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산전 진찰비)                                 | 보건복지부                    | -   | 사업수행 의료기관<br><신청방법> 방문   |                     |
| 고위험<br>임산부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월평균소득 150%)<br>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부,모 둘다 필요),<br>신청서<br>의사진단서, 진료비영수증,<br>자격증빙서류 등 | 시군구보건소<br><신청방법> 방문  |                     |
| 지방자치단체<br>자체 급부<br>(해남군) |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권 배부<br>(다운증후군, 에드워드스후군, 신경관 결손태아 검사 등) | 해남군                      | 임신 확인증  | 보건소<br><신청방법> 방문   |                     |
|                          | 임산부 무료검사(혈액형, 혈청, 간염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12종)            | 해남군                      | 임신 확인증  | 보건소<br><신청방법> 방문   |                     |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전라남도<br>해남군              | 감면 대상별 구비서류   | 보건소<br><신청방법> 방문   |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해남군                      | 바우처 대상자 본인부담 납부 영수증                                     | 보건소<br><신청방법> 방문, 우편   |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체 지원사업                                 | 해남군                      | 셋째아 이상 출산 증빙 자료,<br>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보건소<br><신청방법> 방문   |                     |
|                          |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 전라남도<br>해남군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br>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입증서류                      | 읍·면 주민생활지원팀<br><신청방법> 방문   |                     |

| 유형              | 출산 “급부” 서비스 목록          |                     |   |   |                           |            |
|-----------------|-------------------------|---------------------|---|---|---------------------------|------------|
|                 | 서비스명                    | 소관기관                | 구비서류  | 신청절차  | 접수기관                      |            |
| 일반인             | 배우자출산휴가                 | 고용노동부               | -   | 출산일부터 30일 이내 3~5일   | 사업주에게 신청                  |            |
|                 | (건보)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지역가입자 | 보건복지부               | 가족관계증명서<br>피부양자신청서  | 인터넷, 우편, 팩스   | 건강보험공단 지사                 |            |
|                 |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 보건복지부               | 요양비지급청구서<br>출산확인서   | 방문, 우편, 팩스  | 건강보험공단 지사                 |            |
|                 | 가정양육수당신청                | 보건복지부               | 양육수당신청서<br>통장사본(아동본인명의 또는 부모명의)<br>부와 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br>신청자 신분증<br>장애양육수당신청서(진단서 (5세이하 장애인복지카드 미소지자)<br>농어촌양육수당신청서 농업인확인서 | 아동거주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복지로)<br>(출생후60일전까지신청 하여야출생일로부터소급지원함)                |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에 접수 |            |
|                 | 만0~5세 보육료 신청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br>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 4서식)<br>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사업별 서식1호)<br>장애보육료신청서(장애진단서)           | 아동거주 동주민센터방문, 인터넷(복지로)<br>(어린이집제원하기전에 양육수당에서보육료변경신청하여야함)                |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접수  |            |
|                 | 아이돌봄 서비스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신청서, 정부지원자격증명서류 * 취업증명서류   | (생후3개월 이후) 인터넷(복지로), 방문   | 주민센터, 제공기관                |            |
|                 | 영유아건강검진                 | 보건복지부               |   | 생후4개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  |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            |
|                 | 선천성대사이상2차정밀 검사비지원       | 보건복지부               | 진단서, 부모 신분증   | 방문  | 보건소                       |            |
|                 | 선천성감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료비지원     | 보건복지부               | 진단서, 영수증, 부모 신분증  | 방문  | 보건소                       |            |
| 일반인 (여성근로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 고용노동부               | 지원금신청서<br>근로계약서및임금대장사본  | 사업자 신청  | 고용센터                      |            |
|                 |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 휴가급여신청서<br>휴가확인서<br>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사본  | 사업자 신청  | 고용센터                      |            |
|                 | 육아휴직급여                  | 고용노동부               |   | 방문, 우편, 인터넷   | 고용센터                      |            |
| 다자녀             | 두자녀 이상                  | 국민연금출산크레딧           | 국민연금관리공단  | 가족관계등록부   | 방문 (가족관계등록부 지참)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 자격증명 및 소득증빙서류 (셋째자녀의 경우 제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신청서                      | 방문                        | 보건소        |
|                 | 세자녀 이상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영유아의료비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 진단서, 영수증, 자격증명서류  | 방문                        | 시군구, 보건소   |
|                 |                         | (다자녀)주택특별공급제도       | 국토교통부   | 특별공급신청서등 자격증명서류   | 방문                        | 내공사        |
|                 |                         | (다자녀)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 국토교통부   | 매매계약서 및 자격증명서류  | 방문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 금융기관       |
|                 |                         | (다자녀)도시가스요금감감       | 한국가스공사  | 요금감감신청서<br>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br>주민등록등본  | 자격증명을 준비하여 방문, 팩스, 우편     | 관할 도시가스회사  |
|                 |                         | (다자녀)전기료감액          | 한국전력공사  | 감액신청서<br>자격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br>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br>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전력공사방문, 우편, 아파트관리사무소      | 관할 전력공사 지점 |
|                 |                         | (다자녀)난방비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  | 감면신청서<br>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 인터넷 (연1회 산정 후 지급), 설치지역   | 지역난방공사     |
|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감면 | 행정자치부                   | 자격증명서류              | 방문 (가족관계등록부 지참)   | 주소지시군구  |                           |            |

| 유형   | 출산 “급부” 서비스 목록           |   |                                    |  |                               |                    |
|--|--------------------------|---|------------------------------------|--|-------------------------------|--------------------|
|  | 서비스명                     | 소관기관  | 구비서류                               | 신청절차   | 접수기관                          |                    |
| 한부모<br>(미혼모/부<br>자)                                      | 미혼모/부자지원기관운영             | 여성가족부   |                                    | 사업수행기관(전국17개소) 방문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                    |
|  | 저소득한부모가족주거지원             | 여성가족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br>자격증명서류                | 모/부자가족 복지시설<br>입소지원, 방문                                    | 주민센터                          |                    |
|  | (한부모)<br>도시가스요금경감        | 한국가스공사  | 자격증명서류                             | 자격증명을 준비하여<br>방문, 팩스, 우편                                   | 관할<br>도시가스<br>회사              |                    |
| 저소득  | 저소득층                     |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 보건복지부                              | ※ 저소득 자격여부 확인<br>※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동시에<br>신청하는 경우 있음           | 0세~12세 아동,<br>산전산후검진,<br>부모교육 | 시군구청               |
|  |                          | (긴급복지)해산비지원   | 보건복지부                              |  | 위기상황발생시 현장<br>확인 후, 방문        | 시군구청               |
|  | 기초생활수급자                  | 해산급여  | 보건복지부                              |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br>자격증명서류                                   | 방문                            | 주민센터               |
|  |                          | 신생아의 난청진단<br>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신분증, 자격증명서류(출산 3개월<br>전부터 신청가능)<br>출생증명서(출생 후 신청시)         | 방문                            | 보건소                |
|  | 의료보험수급권자                 | 의료급여(요양비) :<br>의료기관X 출산후 요양                           | 보건복지부                              |  | 방문 (요양비 지출 후<br>지급청구)         | 주민센터               |
|  |                          | 신생아의 난청진단<br>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 자격증명서류(출산<br>3개월 전부터 신청가능)<br>출생증명서(출생 후 신청시)     | 방문                            | 보건소                |
|  | 전국가구평균소득<br>(%)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br>사업 (65%이하)                             | 보건복지부                              | 출산(예정)일증빙서류<br>소득증빙서류                                      | (기초)해산급여,<br>(긴급)해산비 중복불가     | 주민센터,<br>보건소       |
|  |                          | 산모신생아<br>건강관리사지원사업<br>(50%이하)                         | 보건복지부                              | -  | 방문                            | 보건소                |
|  |                          | 신생아의 난청진단<br>의료비 지원 (60%이하)                           | 보건복지부                              | -  | 방문                            | 보건소                |
|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br>영유아의료비 (150%<br>이하)                   | 보건복지부                              | -  | 방문                            | 시군구,<br>보건소        |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br>유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  | 방문                            | 보건소                |
|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br>사비 지원사업 (30%)                         | 보건복지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부·<br>모 신분증                                | 방문                            | 보건소                |
|  |                          | 근로(자녀)장려금(부부합<br>산 소득계산 기준)                           | 국세청                                | -  | 전화, 인터넷, 서면<br>(연1회 5월 신청)    | 홈택스                |
|  |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br>지원 (1~6급)                               | 보건복지부                              |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br>본인명의 통장사본,<br>(사산시)의료기관발행사산(사태)진<br>단서 | 방문,<br>(기초)해산급여와<br>중복지원가능    | 주민센터               |
|  | 지방자치단체<br>자체 급부<br>(해남군) | 신생아 양육비 지원<br>(출생일 이전 군관내<br>주민등록을 두고 실제<br>거주하는 신생아) | 전라남도<br>해남군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방문                            | 읍·면<br>주민생활<br>지원팀 |
| 산모·아기사랑 택배 지원<br>(출생일 이전 군관내<br>주민등록을 두고 실제<br>거주하는 신생아) |                          | 해남군   | 신청서                                | 방문   | 읍·면<br>주민생활<br>지원팀            |                    |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br>(셋째아 이상)                                 |                          | 해남군   | 신청서                                | 방문   | 읍·면<br>주민생활<br>지원팀            |                    |
| 유축기 대여<br>(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및 수유부)                           |                          | 해남군   | 출생증명서                              | 방문   | 보건소                           |                    |
| 출산축하용품 지원<br>(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 해남군   | 출생증명서                              | 방문   | 보건소                           |                    |
| 다자녀가정(5인이상)<br>생활안정금 지원                                  |                          | 해남군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br>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방문   | 읍·면<br>주민생활<br>지원팀            |                    |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별표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

| 대 상                                      | 서비스명  | 소관기관      | 기재사항 등  |
|--|---|-----------|---|
| 취학 전 84개월 미만 가정 양육 아동                    | 양육수당 지원   | 보건 복지부    | (공통 기재사항)<br>· 신청인과 출산자의 인적정보 등<br>· 수급통장 계좌번호(아동 또는 신청권자* 명의)<br>* 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
| 생후 1년 미만 영아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한국전력 공사   | · 고객명, 고객번호<br>* 다자녀 전기료 경감과 중복할인 안됨  |
| 다자녀<br><br>*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3자녀(또는 손) 이상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한국가스 공사   | ·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  | (다자녀) 전기료 경감                                      | 한국전력 공사   | · 고객명, 고객번호   |
|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한국지역 난방공사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br>· 수급통장 계좌번호  |
| 생계·주거·의료 급여 수급자                          | 해산급여 지급   | 보건 복지부    | · 수급통장 계좌번호(수급자 가구원 명의)<br>*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
|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보건 복지부    | · 수급통장 계좌번호(출산자 명의)<br>*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출산자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출산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명의의 통장사본        |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br>(해남군)                   | 신생아 양육비 지원<br>(출생일 이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 해남군       | · 신청인, 출산자, 신생아 인적정보<br>· 수급통장 계좌번호(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통장)                               |
|  | 산모·아기사랑 택배 지원<br>(출생일 이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 해남군       | · 신청인, 출산자, 신생아 인적정보<br>· 수령지주소(해남군 관내)   |
|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br>(셋째아 이상)                          | 해남군       | · 신청인, 출산자, 신생아 인적정보  |
|  | 유축기 대여<br>(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및 수유부)                    | 해남군       | · 신청인, 출산자, 신생아 인적정보  |
|  | 출산축하용품 지원<br>(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해남군       | · 신청인, 출산자, 신생아 인적정보  |
|  | 셋째아 이상 기저귀 구입비 지원                                 | 해남군       | · 신청인, 출산자, 신생아 인적정보  |

[별표 2]

임신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

| 대 상         | 서비스 명  | 소관기관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
|-------------|--|---|---|---|---|-----|
| 일반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 보건복지부                                     | 임신헌인서   | 방문  | 보건소<br>(의료기관)                                     |     |
|             | 산모건강관리<br>(엽산제/철분제 지원)   | 보건복지부                                     | 임신헌인서   | 방문  | 보건소   |     |
|             | (건보) 임신·출산진료비지원<br>(국민행복카드)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br>임신헌인서  | 방문,<br>공단·카드사<br>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br>지사, 국민행<br>복카드사(BC,<br>삼성, 롯데), 우<br>체국 |     |
|             | (건보) 임신출산진료비 잔액확인  | 보건복지부                                     |   | 인터넷<br>(www.nhis.or.kr)   | 건강보험공단<br>지사                                      |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br>(아내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  | 보건복지부                                     | 신분증(부부 모두 필요),<br>난임진단서   | 방문  | 보건소   |     |
|             |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br>* 약물, 알코올, 방사능 등 잘못된<br>정보로 인한 임신중절 예방   | 보건복지부                                     |   | 방문, 전화  | 한국마더세<br>이프 전문상<br>담센터                            |     |
| 근로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br>일, 근무개시 및 종료 시각을 적은<br>문서, 의사 진단서  | 근로시간 단축 개<br>시 예정일의 3일<br>전까지 사업주에게<br>신청   | 사업주   |     |
|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br>*근로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br>후에 임금 삭감 없이 1일 6시간까<br>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여 사용,<br>사업주에게는 월 4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br>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취업규<br>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br>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br>증빙서류, 지문인식기·카드리더기 등 전<br>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기록 | 근로자 전환(근로시<br>간 단축)일로부터 6<br>개월 이내에 지원금<br>신청서 제출<br>방문, 우편, 인터넷<br>(www.work.go.kr)<br>* 사업주가 신청         | 고용센터  |     |
|             | 유산·사산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 유산·사산확인(진단)서, 근로계약서,<br>임금대장  | 방문, 인터넷<br>(www.ei.go.kr)   | 고용센터  |     |
| 청소년         | (청소년)임신출산진료비지원<br>(국민행복카드)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br>인서   | 방문, 인터넷<br>(www.socialservice<br>.or.kr)  | 사회보장정<br>보원                                       |     |
| 저<br>소<br>득 | 의료<br>급여<br>수급자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br>인서   | 방문  | 보건소 |
|             | 기준<br>중위<br>소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br>(80% 이하)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출산예<br>정일 증빙서류  | 방문  | 보건소 |
|             |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br>(신생아 청각선별검사)<br>(72% 이하)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건강보험<br>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br>* 확진 검사비 지원 시, 청각선별검사 쿠<br>편재검(RFFR) 체크, 진단서 및 검사비<br>영수증 추가 | 방문  | 보건소 |
|             | 기초<br>생활<br>수급자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br>(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br>의료급여수급증, 주민등록등본   | 방문  | 보건소 |
| 장애인         | 여성장애인이어울림센터<br>(고충상담지원)  | 보건복지부                                     |   | 전화, 우편  | 여성장애인<br>어울림센터                                    |     |
| 다문화가정       |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br>(산전 진찰비)  | 보건복지부                                     | 근무사실확인서,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br>영수증   | 방문  | 사업수행<br>의료기관                                      |     |
| 고위험<br>임산부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br>(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br>*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br>신 중독증의 비급여 입원진료<br>비용                       | 보건복지부                                     |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br>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주민등<br>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br>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신분증   | 방문  | 보건소   |     |

임신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

| 대 상                       | 서비스 명   | 소관기관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
| 지방자치 단체<br>자체 급부<br>(해남군) |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권 배부<br>(다운증후군, 에드워드스증후군,<br>신경관 결손태아 검사 등) | 해남군          | 임신 확인증                             | 방문   | 보건소               |
|                           | 임산부 무료검사( 혈액형,<br>혈청, 간염항원.항체검사,<br>풍진검사 등 12종)         | 해남군          | 임신 확인증                             | 방문   | 보건소               |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전라남도,<br>해남군 | 감면 대상별 구비서류                        | 방문   | 보건소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br>본인부담금 지원                                 | 해남군          | 바우처 대상자 본인부담 납부<br>영수증             | 방문   | 보건소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체<br>지원사업                                  | 해남군          | 셋째아 이상 출산 증빙 자료,<br>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방문   | 보건소               |
|                           |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 전라남도,<br>해남군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br>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입증서류 | 방문   | 읍면<br>주민생활<br>지원팀 |

[별표 3]

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

| 대 상             | 서비스 명  | 소관기관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
| 일반              | 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노동부         | 출생증명서 등 사업주 요청서류  | 출산일부터 30일 이내<br>* 근로자가 신청  | 사업주         |
|                 | (건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지역가입자)                        | 보건복지부         | 가족관계증명서   | 우편, 팩스, 인터넷<br>(www.nhis.or.kr)                                    | 건강보험공단 지사   |
|                 |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보건복지부         | 출산확인서   | 방문, 우편, 팩스   | 건강보험공단 지사   |
|                 | 양육수당   | 보건복지부         |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부와 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분증<br>*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br>*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농업경영체증명서 등 농어업인 확인서류 | 방문, 인터넷<br>(www.bokjiro.go.kr)<br>*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종일형 사유 확인서(종일반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br>* 장애보육료 신청 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단, 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는 의사진단서                    | 방문, 인터넷<br>(www.bokjiro.go.kr)<br>* 어린이집 등록 전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 필요 | 읍면동 주민센터    |
|                 | 아이돌봄 서비스   | 여성가족부         | 정부지원자격 증명서류<br>*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 서류 없음<br>* 생후 3개월 이후 아동 대상  | 방문, 인터넷<br>(www.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보건복지부         | 진단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방문   | 보건소         |
|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보건복지부         |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신분증                                   | 방문   | 보건소         |
|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37주미만 또는 2500g 이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 보건복지부         |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방문, 우편, 팩스<br>* 출생 후 3년까지 등록일로부터 경감 적용                             | 건강보험공단 지사   |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보건복지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모자보건수첩  | 방문   |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한국전력 공사  | 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방문, 우편<br>* 신청일로부터 1년간  | 주민센터,한전  |             |
| 근로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신기간-출산휴가-육아휴직 실시 증명서류<br>*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 방문, 우편, 인터넷<br>(www.ei.go.kr)<br>* 사업주가 신청                         | 고용센터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방문, 우편, 인터넷<br>(www.ei.go.kr)<br>* 근로자가 신청                         | 고용센터        |
|                 | 육아휴직급여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방문, 우편, 인터넷<br>(www.ei.go.kr)<br>* 근로자가 신청                         | 고용센터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방문, 우편, 인터넷<br>(www.ei.go.kr)<br>* 근로자가 신청                         | 고용센터        |
| 다자녀<br>(3자녀 이상)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주민등록등본<br>* 확진 검사비 지원 시, 청각선별검사 쿠폰[재검(REFER) 체크],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  | 방문   | 보건소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 사군·구청, 보건소  |

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

| 대 상             | 서비스 명   | 소관기관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
| 다자녀<br>(3자녀 이상) | (다자녀)주택특별공급                                   | 국토교통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무주택 서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신분증 | 방문  | 내공사                   |
|                 | (다자녀)주택구입, 전세 자금대출                            | 국토교통부    |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 방문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
|                 | (다자녀)도시가스료 경감                                 | 한국가스공사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팩스, 우편  | 관할 도시가스회사             |
|                 | (다자녀)전기료 경감                                   |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방문, 우편  | 한국전력공사 지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
|                 | (다자녀)지역난방비 경감                                 | 한국지역난방공사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www.kdhc.co.kr)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
|                 |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 감면                              | 행정자치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 시·군·구청                |
| 한부모<br>(미혼모/부자)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 여성가족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 관계증명서<br>* 출산·양육 지원 및 친자검사 신청 시는 소득증빙 서류 또는 신청서 추가 제출                   | 방문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
|                 |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여성가족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br>자격증명서류(상담을 통해 결정)  | 방문, 인터넷 (www.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자료(상담을 통해 결정)  | 방문, 전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시·군·구청    |
|                 | (차상위계층한부모) 도시가스요금경감                           | 한국가스공사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br>* 다자녀 요금감면 등과 중복 불가   | 방문, 팩스, 우편  | 관할 도시가스회사             |
|                 | (한부모)전기료 감액                                   | 한국전력공사   | 한부모가족증명서  | 방문, 전화  | 한국전력공사 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
|                 | (한부모)건강보험료 경감                                 | 보건복지부    | 자격증명서류 (소득인정액, 재산소득 환산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   |   | 건강보험공단 지사             |
|                 | (한부모)정부양육할인 지원                                | 보건복지부    |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                 | 이동전화서비스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월 최대 10,500원) | 미래창조과학부  | 신분증   | 방문  | 통신사 대리점               |
|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월8만원이내)                         | 문화체육관광부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대리인 신분 증명서 사본 1부                         | 방문, 인터넷 (www.svoucher.or.kr)                          | 시·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
|                 | 경찰청소관 과태료 감면 (50%이내)                          | 경찰청      | 한부모가족증명서  | 방문  | 경찰서                   |
|                 |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수수료의 80%이내)                      | 교통안전공단   | 한부모가족증명서  | 방문  |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산하 출장소     |
| 저소득층            |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                             | 보건복지부    | * 임산부,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 확인                                       | 전화, 방문  | 시·군·구 드림스타트           |
|                 | (긴급복지)해산비지원                                   | 보건복지부    |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시·군·구 사전확인 필요 | 시·군·구청                |
|                 | 문화누리카드 지원 (6세 이상, 연6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 신분증   | 방문, 인터넷 (www.munhwanuricard.kr)                       | 읍·면·동 주민센터            |

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

| 대 상 | 서비스 명                    | 소관기관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
|-----|--------------------------|---|---|---|---|-----------------|
| 저소득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해산급여  | 보건복지부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필요 없음), 통장사본(필요시)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     | 기초생활 수급자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증, 주민등록등본   | 방문  | 보건소             |
|     |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요양비) : 의료기관 외 출산 후 요양                          | 보건복지부   |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 등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     | 기준 중위소득                  | 산 모 신 생 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80% 이하)                        | 보건복지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방문  | 보건소             |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40% 이하)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br>* 조제분유 신청 시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추가          | 방문, 인터넷<br>(www.bokjiro.go.kr)  | 보건소<br>읍면동 주민센터 |
|     |                          |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개안수술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 보건복지부   | 진료소견서   | 방문  | 한국실명예방재단        |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180% 이하)                         | 보건복지부   |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방문  | 사·군구청, 보건소      |
|     |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72%이하)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br>* 확진 검사비 지원 시, 청각선별검사 쿠폰[재검(REFER) 체크],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 | 방문  | 보건소             |
|     |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30%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자)  | 보건복지부   | - 소득확인서류<br>·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서류 없음<br>·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및 건보료 납입증명서<br>- 검진결과 확인 서류<br>·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서류 없음<br>·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통보서 | 방문              |
|     | 근로(자녀)장려금(부부 합산 소득계산 기준) |   | 국세청   |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자료와 다를 경우에만 소득, 재산 등 증거서류 제출  | 전화, 우편, 인터넷<br>(www.hometax.go.kr)  | 세무서, 홈택스        |
|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1~6급)      | 보건복지부   | 신분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산·유산시)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br>*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출산자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통장사본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

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

| 대 상                      | 서비스 명   | 소관기관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
| 지방자치단체<br>자체 급부<br>(해남군) | 신생아 양육비 지원<br>(출생일 이전 관내에 주소를<br>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 해남군  | 신청서, 신분증   | 방문   | 읍면<br>주민생활<br>지원팀 |
|                          | 산모·아기사랑 택배 지원<br>(출생일 이전 관내에 주소를<br>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 해남군  | 신청서  | 방문   | 읍면<br>주민생활<br>지원팀 |
|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br>(셋째아 이상)                            | 해남군  | 신청서  | 방문   | 읍면<br>주민생활<br>지원팀 |
|                          | 유축기 대여<br>(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br>및 수유부)                   | 해남군  | 출생증명서  | 방문   | 보건소               |
|                          | 출산축하용품 지원<br>(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br>및 수유부)                | 해남군  | 출생증명서  | 방문   | 보건소               |
|                          | 셋째아 이상 기저귀<br>구입비 지원                                | 해남군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br>건강보험증 사본,<br>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br>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방문   | 보건소               |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3. 20.)에서 의결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2일

해남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해남군 조례 제2710호

붙임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text{연체금} = \text{미납요금} \times 2/100 \times 12\text{개월} \times \text{연체일수} / 365$$

- ② 제1항에 따른 일할 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요금의 100분의 20. 다만,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급(1년에 2차례, 요금 납부액을 가구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20)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8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 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p> <p>②</p>               | <p>제28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 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p> <p>연체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p> <p>② 제1항에 따른 일할 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p> |
|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은 감면하지 않는다.</p> <p>1. ~ 4. (생략)</p> <p>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요금의 100분의 10. 다만, 공동주택</p> |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br/>-----<br/>----- . -----<br/>-----<br/>-----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요금의 100분의 20. 다만, 공동주택</p>                           |

등의 경우에는 주 계량기 및 배관시설이 수급권자와 분리되어 수급권자가 사용한 수량을 따로 계량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7. (생략)

② (생략)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급(1년에 2차례, 요금 납부액을 가구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20)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3. 20.)에서 의결된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2일

해남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해남군 조례 제2711호

붙임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급(1년에 2차례, 요금 납부액을 가구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20)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0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요금의 <u>100분의 10</u> &lt;단서 신설&gt;</p> <p>5. (생략)</p> <p>②·③ (생략)</p> | <p>제20조(감면 등) ① -----<br/>-----<br/>-----<br/>-----<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br/>-----<br/>---- <u>100분의 20</u>. 다만,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u>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급(1년에 2차례, 요금 납부액을 가구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20)</u></p> <p>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7

F10

해남군공고제2018-628호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허가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0.

해 남 군 수



| 연번 | 신청인                 | 신청지         |        |    | 면적(m <sup>2</sup> ) |         | 용도                 |
|----|---------------------|-------------|--------|----|---------------------|---------|--------------------|
|    | 성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신청면적    |                    |
| 1  | 이○○                 |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 443-2  | 임  | 1,339.5             | 1,339.5 | 동식물관련시설 (우사 및 퇴비사) |
| 2  | 에스엠에너지<br>김○○ 외 5인  | 해남군 화산면 송산리 | 산28    | 임  | 31,339              | 31,339  | 태양광발전시설            |
| 3  | (주)우리<br>임○○        |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 산224   | 임  | 8,628               | 4,950   | 태양광발전시설            |
| 4  | 썬시멘트<br>주식회사<br>임○○ |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 산15-2  | 임  | 22,215              | 13,671  | 야적장(광미)            |
| 5  | 김○○                 |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 산44-24 | 임  | 2,113               | 2,113   | 동식물관련시설 (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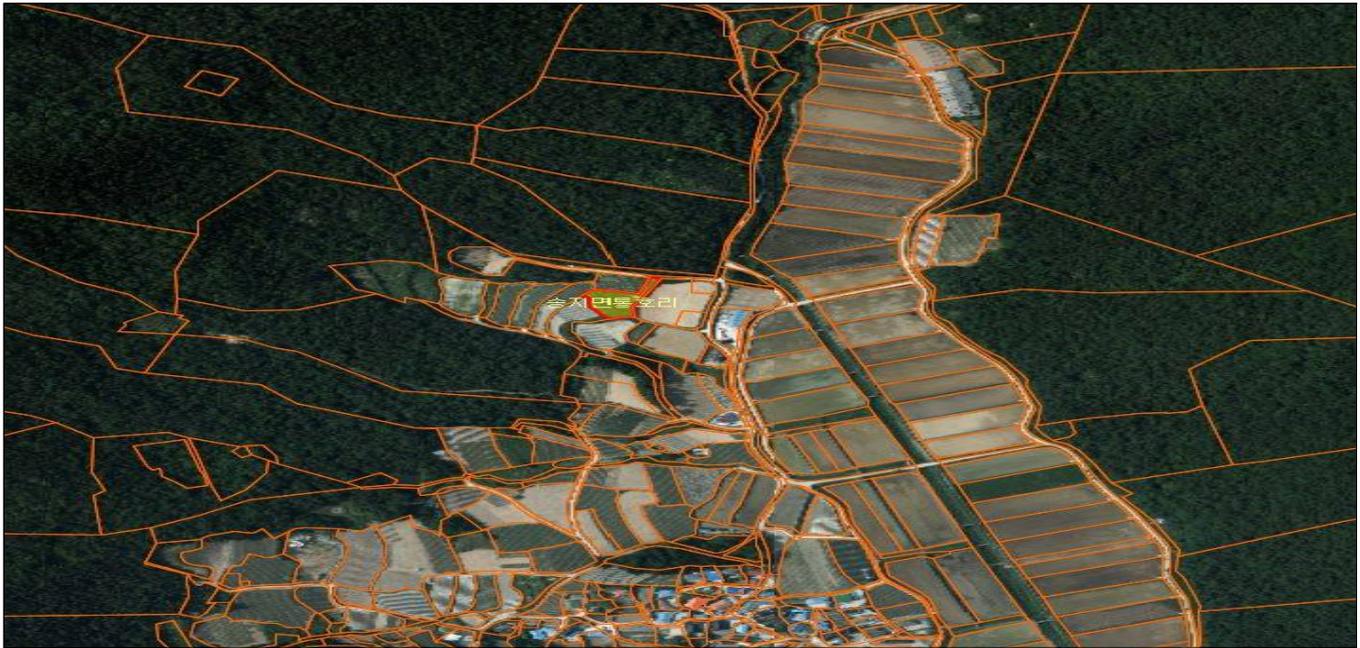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  
○ 공고기간: 2018. 3. 20. ~ 2018. 4. 3.

○ 의견제시방법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8년 4월 4일까지 해남군청 산림녹지과 및 해당 면사무소에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허가에 따른 이의가 있을시 그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위치도



전남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443-2

■ 위치도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산리 산28

■ 위치도



전남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산224

■ 위치도



전남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산15-2

■ 위치도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산44-24

**해남군공고제2018-631호**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해 남 군 수**

**1. 규칙명**

-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자활기금을 운용 관리코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 운영기준 (안 제2조)
-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4조)
- 신청 및 교부(안 제5조)
- 기금 지급(안 제 6조)
- 기금 반환 통보(안 제8조)
- 상환기한 연장(안 제9조)
- 감면조치(안 제10조)
- 상환통지 및 독촉(안 제13조)
- 장부의 비치(안 제14조)

**4. 관련근거**

○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5. 입법예고기간 : 2018. 3. 21. ~ 2018. 4. 4. (15일간)

### 6.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해남군수(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37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희망복지팀)

(전화 061-530-5317, FAX 061-530-55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www.haenam.go.kr)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 7. 기타

○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주민복지과 담당자 김미자(전화 061-530-53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군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3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 목적에의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자활기금 대여 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 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여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금 교부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용자를 할 수 있다.

**제7조(전세점포 대출 및 상환)** ①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3년 이내 거치기간 완료 후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조례 제10조에 의해 3년 거치 7년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기금반환 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

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 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환통지 및 독촉)** 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30일 전에 상환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12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각각 7일 이내에 2차 및 3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은 1차 30일 이내, 2차·3차는 20일 이내로 한다. ⑤ 3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를 준용해서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장부의 비치)** 기금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 서식)
2.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4호 서식)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 총 사 업 비 | 지 원 액   | 자체 부담액 | 후 원 금 | 비 고 |
|---------|---------|--------|-------|-----|
|         |         |        |       |     |
| 사 업 기 간 |         |        |       |     |
| 사 업 계 획 | “ 별 첨 ” |        |       |     |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단체)

- 1. 기관(단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연락처 :
- 2. 지원신청 금액 :
- 3. 지원신청 사유 :
- 4. 사업계획
  - 가. 사업명 :
  - 나. 사업내용 :
  - 다. 사업장 위치 :
  - 라. 사업의 필요성 :
  - 마. 사업기간 :
  - 바. 재원계획

| 총사업비 | 지원액 | 자부담 | 자부담 방법 | 비고 |
|------|-----|-----|--------|----|
|      |     |     |        |    |

사. 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2. 생년월일(법인번호) :
3. 주소 :
4. 연락처 :
5. 사업명 :
6. 사업목적 :
7. 사업개요 :
8. 소요경비재원 :

| 총사업비 | 신청액    | 자체부담액 | 후원금   | 비고    |
|------|--------|-------|-------|-------|
|      |        |       |       |       |
| 사업기간 |        |       |       |       |
| 사업계획 | " 별첨 " |       |       |       |
| 신청계좌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은행명 : |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 해 남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 결정 통지합니다.

20 . . .

# 해 남 군 수 (인)

[별지 제6호 서식]

#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 1. 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 2. 상환금액 : 금 원(₩ 원)

| 원금 | 이자 | 비 고 |
|----|----|-----|
|    |    |     |

## 3. 회수사유 :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 5. 상환방법 :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20 . . .

해 남 군 수 (인)

[별지 제7호 서식]

##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 원금 | 이자 | 비 고 |
|----|----|-----|
|    |    |     |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해 남 군 수 귀 하

[별지 제8호 서식]

#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 원금 | 이자 | 비 고 |
|----|----|-----|
|    |    |     |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해 남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원)

### 3. 변경사유

###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 구 분    | 당초계획 | 변경계획 | 비 고 |
|--------|------|------|-----|
| 예산변경   |      |      |     |
| 사업내용변경 |      |      |     |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해 남 군 수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 구 분 | 사업비 집행내역 |       |     |       | 비 고 |
|-----|----------|-------|-----|-------|-----|
|     | 총사업비     | 기금지원액 | 자부담 | 후원금 등 |     |
| 계   |          |       |     |       |     |
| 집행액 |          |       |     |       |     |
| 잔 액 |          |       |     |       |     |

5. 참고자료

-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해남군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해 남 군 수 귀 하

[별지 제11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 제 호   | 년도 | 해남군자활기금<br>특별회계           |    |
|---|----|---------------------------|----|
| (장) 세 외 수 입   |    | (관) 경상적,임시적<br>세외수입       |    |
| (항) 융자금이자<br>및 원금수입   |    | (목) 민간융자금 이자,<br>원금 회수 수입 |    |
| 적요  | 년도 | 융자<br>년도                  | 년도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금</span> <span>원</span> </div> |    |                           |    |
| ₩ 원   |    |                           |    |
| - 원 금 : 원<br>- 이 자 : 원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br>납부장소 : 관내농협<br>위와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br>20 년 월 일<br>해 남 군 수  |    |                           |    |

영 수 필 통 지 서

| 제 호   | 년도 | 해남군자활기금<br>특별회계           |    |
|---|----|---------------------------|----|
| (장) 세 외 수 입   |    | (관) 경상적,임시적<br>세외수입       |    |
| (항) 융자금이자<br>및 원금수입   |    | (목) 민간융자금 이자,<br>원금 회수 수입 |    |
| 적요  | 년도 | 융자<br>년도                  | 년도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금</span> <span>원</span> </div> |    |                           |    |
| ₩ 원   |    |                           |    |
| - 원 금 : 원<br>- 이 자 : 원<br><br>납부기한 : 년 월 일<br>납부장소 : 관내농협<br>위와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br>20 년 월 일<br>해 남 군 금 고 (인)<br>징 수 관 귀하  |    |                           |    |

영 수 증

| 제 호   | 년도 | 해남군자활기금<br>특별회계           |    |
|---|----|---------------------------|----|
| (장) 세 외 수 입   |    | (관) 경상적,임시적<br>세외수입       |    |
| (항) 융자금이자<br>및 원금수입   |    | (목) 민간융자금 이자,<br>원금 회수 수입 |    |
| 적요  | 년도 | 융자<br>년도                  | 년도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금</span> <span>원</span> </div> |    |                           |    |
| ₩ 원   |    |                           |    |
| - 원 금 : 원<br>- 이 자 : 원<br><br>상기 금액을 영수함.<br><br>20 년 월 일<br>해 남 군 금 고 (인)  |    |                           |    |

[별지 제12호 서식]

###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용자금상환 ( )차독촉장

귀하가 해남군 자활기금 특별회계에서 용자(대부)받은 (보증하신) 자금의 상환기한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 )차독촉 하니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해남군 자활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등 강제징수 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자 금 명        |                                    | 용자일자                |     |
| 용 자 금 액      | ₩ 원                                | 미상환<br>(체 납)<br>금 액 | ₩ 원 |
| 상 환 예 정 금 액  | 원(원금:      이자 :      연체:      )    |                     |     |
| 상 환 기 한      |                                    |                     |     |
| 상 환 대 상<br>자 | 주 소 : 해남군      읍·면      길<br>성 명 : |                     |     |
| 보 증 인        | 주 소 :      성명 :<br>주 소 :      성명 : |                     |     |

(※ 연체료는      .      .      까지 계산되었으며 납부일자에 의해 변경됨)

해 남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 자활기금 교부대장

| 년월일 | 적요 | 지급처 | 지급액 | 비고 |
|-----|----|-----|-----|----|
|     |    |     |     |    |

[별지 제14호 서식]

## 자활기금 상환카드

|               |                    |      |  |      |  |
|---------------|--------------------|------|--|------|--|
| 일련번호          |                    |      |  |      |  |
| 대여(상환)자       |                    |      |  | 보증인  |  |
| 성명            |                    | 전화번호 |  | 성명   |  |
| 주소            |                    |      |  | 주소   |  |
| 생년월일          |                    |      |  | 생년월일 |  |
| 대여액           |                    | 용도   |  | 성명   |  |
| 대여일시          |                    |      |  | 주소   |  |
| 상환개시<br>(만기)일 | 20 . . . ~ . . .   |      |  | 생년월일 |  |
| 상환방법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  |      |  |
| 비고            |                    |      |  |      |  |

##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 구분 | 회수 | 징수<br>조정일 | 상 환 |   |    |    |     | 원금<br>잔액 | 취급자<br>(인) |
|----|----|-----------|-----|---|----|----|-----|----------|------------|
|    |    |           | 수납일 | 계 | 원금 | 이자 | 연체금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11 |    |           |     |   |    |    |     |          |            |
| 12 |    |           |     |   |    |    |     |          |            |
| 13 |    |           |     |   |    |    |     |          |            |
| 14 |    |           |     |   |    |    |     |          |            |
| 15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남군공고제2018-640호**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어항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공고**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 일원에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어항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공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 3. 23.

해 남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중로 2-27호선, 항만 2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4.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31일
5. 사업규모

■ (중로 2-27호선)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m) | 시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결정 | 중로  | 2  | 27 | 15~20m 미만 | 보조간선 도로 | 1,074 | 대로 3-4 | 우수영 항만 | 일반 도로 |    |
| 시행 | 중로  | 2  | 27 | 15~20m 미만 | 보조간선 도로 | 237   | 대로 3-4 | 우수영 항만 | 일반 도로 |    |

※ 시종점 변경없이 일부구간 시행

■ (항만 2)

| 항만 종류 | 항만 명칭 | 규 모 |          | 사용 형태 | 비고                  |
|-------|-------|-----|----------|-------|---------------------|
|       |       | 번호  | 어항구역 (㎡) |       |                     |
| 지방어항  | 우수영항  | 2   | 454,000  | 어항    | 어항구역 내 물양장 L=96m 시행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해양수산과(☎061-530-541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해남군공고제2018-646호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허가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3.

해 남 군



| 연번 | 신청인      |                   | 신청지  |                       |        | 면적(m <sup>2</sup> ) |             | 용도 |
|----|----------|-------------------|--|-----------------------|--------|---------------------|-------------|----|
|    | 성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신청면적                |             |    |
| 1  | 김○○      | 해남군<br>현산면<br>읍호리 | 산144-2<br>1066-1                             | 임<br>전                | 40,569 | 7,496               | 동식물관련시설(계사) |    |
| 2  | 김○○ 외 2인 | 해남군<br>마산면<br>학의리 | 산144-3<br>산144-6<br>산144-7<br>1197<br>1197-1 | 임<br>임<br>임<br>답<br>답 | 6,010  | 6,010               | 태양광발전시설     |    |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  
○ 공고기간: 2018. 3. 23. ~ 2018. 4. 6.

○ 의견제시방법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8년 4월 9일까지 해남군청 산림녹지과 및 해당 면사무소에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허가에 따른 이의가 있을시 그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위치도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산144-2 외 1필지

■ 위치도



전남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산144-3 외 4필지

해남군공고제2018-661호

## 해남군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모집공고

정부 100대 국정과제, 지역푸드플랜 선도지자체인 우리 군이 시행하는 「해남군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3월 28일

### 해 남 군 수

#### 1. 평가위원 모집

- 가. 모집기간: 2018. 3. 28. ~ 4. 16.(20일간)
- 나. 모집인원: 평가위원(후보자) 21명(평가위원 수의 3배수)
- 다. 모집분야: 농업, 농촌, 농산물 유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교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
- 라. 모집방법
  - 전자공문서-수신인: 해남군수(유통지원과장)
  - 전자팩스(061-530-5531) · E-mail([ggamkong@korea.kr](mailto:ggamkong@korea.kr)),
  - 우편(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유통지원과)

※ 이메일로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첨부  
마. 평가위원 자격조건

○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모집분야 전공자
- 모집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 농업·농촌·농산물유통 심의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그 밖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 제외대상

- 해당 평가대상 관련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바. 제출서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각 1부

2.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방법: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1 ~ 21번)를 부여,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평

가위원(7개 번호) 수만큼 번호를 선택기입 추천

- 선정순위 ① 다빈도 ② 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③ 예비후보 3명
- 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나. 심사위원 처우

- 위촉장 및 평가수당 지급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분께는 평가 전에 개별 유선 통보

3.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가. 예정일시: 2018. 4. 20.(금) 14:00

나. 장 소: 해남군청 상황실(본관 2층)

※ 일정 및 장소는 추후통보(변경 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시 해촉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유통지원과(061-530-5670)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평가수당을 지급합니다.

마. 상기 내용은 해남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재직증명서